

# 금전소비대차계약서

채권자 주식회사 비아이비 (이하 "갑"이라 함)과(와) 채무자 이낙연 (이하 "를"이라 함)은(는)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.

## 제 1 조 [목적]

본 계약은 "를"의 경영상 일시적 자금의 유용성 약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"갑"으로부터 자금 차입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 조 [대여 일시 및 금액]

"갑"은 2022년 06월 24일 "를"에게 금 이천만원(₩20,000,000)을 대여하며 "를"은 이를 차용한다.

## 제 3 조 [차용금 상환]

"를"은 갑에 대하여 제 2 조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갑의 계좌(기업은행 673-027490-04-016 주식회사 비아이비)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1. 2022년 12월 20일까지 금 이천만원(₩20,000,000) 지급

## 제 4 조 [이자율 등]

1. 본 계약상 대여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5.6%의 비율로 한다.  
2. "를"은 "갑"에 대하여 제 3 조에서 정한 각 원금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갑의 계좌(기업은행 673-027490-04-016 주식회사 비아이비)에 지급한다.

## 제 5 조 [기타의 이익상환]

1



간 1 부씩 보관한다.

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"간"과 "릉"이 기명날인 후

경우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.

본 계약규정 이외에도 "간"과 "릉"은 금전소비대처에 관하여 현행 사행이 법규를

### 제 9 조 [기타]

법령으로 한다.

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수임자법원 성년지정

### 제 8 조 [합의관한]

2. 담보제출에 따른 비용은 "릉"의 부담으로 한다.

양도해 주기로 한다.

1. "릉"은 본 금전소비대처 계약의 담보로서 계약만료시 대역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"릉"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(담보물건: )

### 제 7 조 [담보의 제공]

"릉"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는 그 담사의 원리금 합계에 대하여 상환시부터 자금완판한 때까지 연 10%의 연체순해금률 부과한다.

### 제 6 조 [연체순해금]

만약 때

2. "릉"이 제 3 자로부터 담보, 가압류·가처분을 받거나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 
1. "릉"이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의 지금을 2 회이상 지체할 때

지급한다.

다음의 경우 "릉"은 담보의 기한이익을 잃고 그때에 있어서의 원리금 "간"에게 즉시

4



1081-901 증미성중학 (51) 주  
리해의 사자사 사자용 31200 : 주

918592-411140 : 주 민 들 을 근 주

~ (10) 근 10 : 주

채무자 ("릉")

21981000 은

1사 2사 3사 4사 5사 : 주

801 2000 - 1144 : 주 민 들 을 근 주



1사 2사 3사 4사 : 주

채권자 ("간")

(이하 계속)